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4.2.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3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86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4년 4월 2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임경선

###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 굴착폭을 상향 조정(안 별표 1)
- (2)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괴한 경우 등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안 별표 2)

- (3)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3)
-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별표 3)
- (5) 보도공사 정밀시공 및 시민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 보도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조례에 명문화(안 별표 3)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상수)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도로 굴착복구 시 기층다짐을 견고히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10월 4일 공포·시행 후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區道) 역시 시도(市道)와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굴착복구 공사 시 서울시의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굴착복구 시 진동롤러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최소굴착폭과 최소굴착면적을 기존 0.7m에서 1.2m로 상향 조정하고(안 별표1),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보도 손괴 등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안 별표2),

굴착복구 시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안 별표3), 인력 굴착이 원칙인 보도 상 굴착작업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며(안 별표3), 보도공사 정밀시공과 시민 통행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 함(안 별표3)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